

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시행 공고

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연구산업육성(연구개발서비스 기업 혁신성장 지원)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2월 7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

☐ 사업목적

-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 성장 및 연구개발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R&D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혁신 촉진
 - 주문연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, 연구관리 서비스 전문기업 및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시장 확대

☐ 지원대상 ※ 공모사업별 상이

- 전문연구사업자(주문연구 또는 연구관리), 중소·중견기업, 대학·출연(연) 연구자(또는 창업기업) 또는 중소·중견기업의 분사(예정)기업

1. 세부사업 개요

○ 사업별 지원규모

< 2025년 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 규모 >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		지원기간	지원 금액	지원(과제) 건수	지원 대상 기관 (주관기관)	비고
주문연구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	기술창업		9개월 내외 (1차년도)	150	3개 내외	대학·출연(연) 연구자(예비창업자)또는 공공기술 기반 초기 창업 기업 ³⁾ 중소·중견기업 임·직원(예비창업자) 또는 분사기업 ⁴⁾	총 지원기간 2년(1+1) 연구관리기업(전문 연구사업자 ¹⁾) 컨소시엄 필수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택1 충족
	Scale-Up	국가전략기술 및 도전 혁신형 R&D 분야주문연구	9개월 내외 (1차년도)	225	3개 내외	전문연구사업자 (주문연구) ¹⁾ 학·연 컨소시엄 필수	총 지원기간 2년(1+1)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택1 충족
		주문연구		187.5	2개 내외		유형 선택 필수
	글로벌기업 도약	사전기획 지원	3개월 내외	25	4개 내외	전문연구사업자 (주문연구) ¹⁾ 학·연 컨소시엄 필수	총 지원기간 3년(2+1) 유형별 선택 필수
		혁신서비스 개발지원	6개월 내외 (1차년도)	250	2개 내외	전문연구사업자 (주문연구) ¹⁾ 학·연 컨소시엄 필수	사전기획지원 과제 최종평가 통해 혁신서비스개발지원 2개 과제 선정
프로토타이핑 전문기업 육성			9개월 내외 (1차년도)	225	6개 내외	(기업) 사업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전문연구 사업자 (주문연구, 연구관리) ¹⁾ (공공기관) 공공연구 기관 ²⁾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 지주회사 ⁵⁾ 산학연협력기술지주 회사 ⁶⁾	총 지원기간 2년(1+1) 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공기관 컨소시엄 참여 필수이며, 공공기관이 주관일 경우 기업 참여 필수
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			12개월 내외	200	3개 내외	전문연구사업자 (연구관리) ¹⁾	대학·출연(연) 등 공공연구기관 ²⁾ 컨소시엄(필수)

※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금액이며,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1)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(주문연구, 연구관리)
*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은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중 가, 나 업종 신고기업만 참여 가능
- 2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
- 3) 공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연구자 또는 교원 창업기업으로 전문연구사업자(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) 미신고 기업
- 4) 공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중소·중견기업으로부터 분사하여 창업한 기업으로 전문연구사업자(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) 미신고 기업
- 5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- 6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
○ 사업별 지원내용

사업명			지원내용
주문연구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	기술창업		· 주문연구 서비스 BM 개발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해 후속 기술 사업화 단계(추가 기술개발, 실증, 시제품 제작 등) 지원
	Scale-Up		· 창업 이후, 기업의 Scale-up 촉진을 위해 주문연구 서비스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서비스 고도화 지원
	글로벌 기업 도약	사전기획 지원	· 해외진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주문연구 분야 혁신 서비스 사전 기획 지원
		혁신서비스 개발지원	· (해외 진출형) R&D 집약도가 높고 혁신성 및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주문연구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촉진 * (수출 성장) 해외 수요 기반 연구개발 서비스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실적 도출 · (신시장 창출형) 국가전략기술(12개 분야) 육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 지원
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			· 연구성과 시작품에 대한 수요 발굴·제작 지원을 통한 공공 기술 활용 촉진 및 시작품 제작역량 강화
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			·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첨단기술 기반 유망 IP 발굴·관리, 기술평가 시스템 등 연구관리 기술개발

※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.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

2. 관련법령 및 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-105호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-10호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3.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

○ 제출기한

사업명		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
연구개발 서비스기업 혁신성장 지원	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	· 공고기간 : 2025년 2월 07일(금)~3월 10일(월) 16:00 · 제출기한 : 2025년 2월 27일(목)~3월 10일(월) 16:00
	프로토타이핑 전문기업 육성	· 공고기간 : 2025년 2월 07일(금)~3월 10일(월) 16:00 · 제출기한 : 2025년 2월 27일(목)~3월 10일(월) 16:00
	연구관리혁신서비스 개발	· 공고기간 : 2025년 2월 07일(금)~3월 10일(월) 16:00 · 제출기한 : 2025년 2월 27일(목)~3월 10일(월) 16:00

○ 제출방법 : 해당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

○ 사업별 문의처

사업명		담당자 연락처
연구개발 서비스기업 혁신성장 지원	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신윤미 책임 (02-736-2319)/(02-736-9051)
	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나숙경 책임(02-736-9026)/(02-736-9051)
	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나숙경 책임(02-736-9026)/(02-736-9051)

4. 사업신청 유의사항

○ 지원제외 대상

- (중복지원 및 신청) 기 창업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연구기업
창업지원 사업 신청 불가

- 과기정통부를 포함하여 부처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
<창업(사업자등록)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확보,
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>
* 단,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

- (참여제한)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
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이
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

* 참여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

- (기타사항)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, 과제 신청 기업(주관기관, 참여기관)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구분	예외 사항	비고
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	* 단,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(지원) 가능	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
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	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(지원) 가능	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

○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

- (적용 기준)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(‘3책 5공’)
- *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

○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

-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 연구개발비(현금 포함)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
- *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

○ 기타사항

- (국가연구자번호등록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(<https://www.iris.go.kr>)
- *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(컨소시엄 기관 포함) 연구책임자(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)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
- (전문연구사업자 신고)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(02-779-9071)

- 첨부 1. 사업별 신청안내서 각 1부.
2.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부. 끝.